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. 12. 17 선고 2024가단1284 판결 [공사대금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B

피고주식회사 C

변론 종결2024. 11. 19.

판결 선고2024. 12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5,75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5. 30.부터 2024. 8. 17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가. 'D회사'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23. 4.경부터 2023. 5.경까지 E 도로정비공사 중 일부인 교통표지판 등의 공사를 완료하였다.

나. 피고는 위 공사대금 합계 52,555,000원(부가가치세 별도) 중 17,250,000원만 지급하였다.

다. 피고는 그 나머지 공사대금 35,305,000원 중 2,805,000원을 감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,

원고는 2023. 5. 29. 최종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5,750,000원의

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다.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공사대금 35,75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5.

30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4. 8. 17.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

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권희